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46

발의연월일 : 2026. 10. 29.
발 의 자 : 김형우 의원(1명)
찬 성 자 : 박미정・정지광・조희옥・박은경・하서영・김해바른・정민우・이슬기・김안숙 의원 (총9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실제 구입 비용에 비해 현행 지원한도가 낮아 사업장의 참여가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장 지원 비율과 한도를 현실화하고 가정용과 사업장용의 지원 기준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감량기기 지원과 관련된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여 지원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문의 용어와 인용 조례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제2호, 제5조제2호, 제6조제2호).

나.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기준을 구분함(안 제7조제3항).

다. 지원금 환수 기준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함(안 제10조제3항).

라. 사후관리 의무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함(안 제11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폐기물의”를 “폐기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품질인증제품”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구입금액”을 “가정용의 경우 구입금액”으로, “하고,”를 “하고”로, “가정용 40만원, 사업장 600만원”을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장의 경우 구입금액의 100분의 75 이하로 하고 지원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2년”을 “1년 6개월”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2년”을 “1년 6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4.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폐기물 ---------. 3.·4. (현행과 같음)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를 설치·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3. (생 략)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 1. (현행과 같음) 2. ---------- 품질인증제품 ----------. 3. (현행과 같음)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전용수거용기 또는 RFID 기반 종량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② (생 략)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하는 보조금은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지원 금액은 가정용 40만원, 사업장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가정용의 경우 구입금액----- 하고 ----------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장의 경우 구입금액의 100분의 75 이하로 하고 지원금액은 1천만원---.
제10조(보조금의 반환) ①·② (생 략)	제10조(보조금의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	③ ---------- 1년 6개월 ----------

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 ----------.
제11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구 및 사업장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 ① ---------- ---------- ---------- ------- 1년 6개월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우 의원 발의) 서명부

발의자		찬성자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김형우	김형우	박미정	박미정
		정지광	정지광
		조희욱	조희욱
		박은경	박은경
		하서영	
		김해바른	
		정민욱	
		이승기	
		김안녹	